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특수교육순회교사 56명을 감축하면서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특수학교의 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650명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304명(보건교사 62명, 영양교사 50명, 사서교사 42명, 전문상담교사 150명)을 각각 증원하고,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원장 10명 및 원감 15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교사 25명을 감축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교장 5명을 감축하고, 교감 5명을 증원하면서 교사 정원 2,269명을 감축하며,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교장 19명 및 교감 27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교사 1,458명을 감축하는 한편,

공립의 각급 학교에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0명(교사 500명)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공립의 각급 학교에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07명(교사 1,307명)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공립의 각급 학교에 취약계

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500명(교사 500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고, 공립의 각급 학교에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307명(교사 1,307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교육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28. ~ 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674”를 “2,618”로 하고, 교사 계 “2,654”를 “2,598”로 하며, 특수교육순회교사 “1,772”를 “1,716”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752명(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5명,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269명,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1,45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총계	332,025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4,811
원장	604
원감	1,027
교사	13,180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41,877
교장	6,052
교감	6,195
교사	129,630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34,917
교장	3,946
교감	3,730
교사	127,241
특수학교 계	18,281
교장	103
교감	132
교사(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를 포함한다)	18,046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22,139
보건교사	9,137
영양교사	6,930
사서교사	1,702

전문상담교사

4,370

[별표 3]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한시정원표(제4조 관련)

1. 제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8일)	500
총계	500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500
교사	500
2. 제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500
총계	500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500
교사	500
3. 제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500
총계	500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500
교사	500
4. 제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8일)	1,307
총계	1,307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624
교사	624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683
교사	683
5. 제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1,307
총계	1,307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624
교사	624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683
교사	683
6. 제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1,307
총계	1,307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624
교사	624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683
교사	683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2,674</u>	<u>2,618</u>	-56
교사 계	<u>2,654</u>	<u>2,598</u>	-56
·	·	·	
·	·	·	
특수교육순회교사	<u>1,772</u>	<u>1,716</u>	-56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0